

제1911호

고양시보

2022년 9월 20일(화)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2616호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
고양시 조례 제2617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고양시 조례 제2618호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고양시 조례 제2619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제26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9월 20일

고양시 조례 제2616호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및 고양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각종 법률 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양시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공개 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의 고양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 시장은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아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른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소송심의위원회는 별표의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표에 따라 심의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을 고려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에 대한 평

가결과가 상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비위행위 및 이해충돌 방지)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부패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고문변호사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3. 본인 또는 소속법인이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 가. 불변기일 넘김
 -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 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
 - 라. 품위 손상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5조(임기종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해당업무 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법무업무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 절차는 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형사의 쟁송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갖추고 기록해야 하며, 자문 실적부는 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소송대리운영)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 고

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를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방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정보공개)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문변호사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법무담당관
입안자	과장 성명	법무담당관 서 병 하
	팀장 성명	송무지원팀장 김 경 한
	담당자 성명·전화	이 혜 진 031-8075-2363

[별표]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표(제2조제2항 관련)

□ 지원자 :

심사영역 및 항목	배 점				
1. 전문성(30점)	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				
-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 사건 수임 건수 (20점)	10건 이상(20점)				
	5건 이상(16점)				
	5건 미만(12점)				
- 전문분야 가점 (부동산, 건설, 조세, 수용·보상, 손해배상, 행정법) (10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자				
2. 자격 및 업무연관성(30점)	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				
- 법조 경력 (10점)	15년 이상(10점)				
	10년 이상(8점)				
	5년 이상(6점)				
- 공직 경력 (20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을 의미하며, 중복 인정 가능	공직경력 (8점)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년 이상(8점)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7년 이상(6점)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4점)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년 미만(2점)			
	고문 변호사 경력(8점)	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5년 이상(8점)			
		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3년 이상(6점)			
		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3년 미만(4점)			
	위원회 경력 (4점)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3년 이상(4점)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2년 이상(3점)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2년 미만(2점)			
3. 종합평가(40점)	매우 우수 (20~16점)	우수 (15~11점)	보통 (10~6점)	미흡 (5~2점)	매우 미흡 (1점)
- 업무관련 이해도 및 전문성 (20점) ※ 자기기술서 ①, ② 참고					
- 지원서 내용의 충실도 및 고문변호사 직무수행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 (20점) ※ 자기기술서 ③ 참고					
총 점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기관을 말한다.

※ 심사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1개씩 제외한 후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0000. 0. 0.

심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

고 문 변호 사 지 원 서

1. 인적사항

지 원 변 호 사	사진 (jpg파일 별도 제출)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소					
		학력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준	
		전화		휴대폰		이메일	

변호사 자 격	시험종류	합격회수	사법연수원기수	변호사자격취득일	개업일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법무 법인· 정부법 무공단	명 칭	대표변호사(이사장)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본사 소재지)				

*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0조부터 제58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법무법인 소속 전담변호사로서 지원하는 경우에만 기재

법조 경력 사항	근무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근무기간 : 년 월 일						

*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근무 및 위촉 현황*	기관명	근무(위촉)기간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근무(위촉) 기간	년 월 일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 및 고문변호사, 위원회 등 위촉 현황

최근 3년 이내 소송 수행 현황*	일 자	당사자명	사건번호	주요소송내용	사건결과 (승소, 패소, 소취하등)	비 고
	합 계		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경우에만 기재

2. 자기기술서

(※ 주요 내용을 기술하되(증빙서류 첨부), 총 4매 이내에서 휴면명조 12p,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 ① **시정 업무관련 이해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당사자가 되는 주요 소송의 당사자 관계, 특징, 예상되는 송무 및 자문과 고양시 고문변호사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갖는 장점 등

- ② **주요 쟁송 및 법률자문 관련 경력 등 전문성:**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기술

- ③ **직무수행계획:** 고문변호사 업무 처리 시 서비스 제공 계획(소송서류 처리 및 소송 진행상황 통보, 소송 진행 중 주요 의사결정방식, 예상 자문 답변기간 등)

본인은 위와 같이 고양시 고문변호사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 제출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제출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해당 선임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정보, 그 밖에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위촉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 됩니다. ① 본인 확인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④ 다만,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사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위촉 및 사후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위 축 장

변 호 사 ○○○
(법무법인 △△ ○○○)

귀하를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직인)

계 약 서

고양시장을 “갑”이라 하고, 변호사 000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고양시 또는 고양시장 및 하부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동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따라 소송수행 및 형사 피소되어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변호를 진행하고, 그 비용의 청구, 진행 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 및 변론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 및 변호의 수행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착수금·승소사례금, 인지액·송달료·검증비·감정료·증인여비·그 밖의 비용 등 소송 및 변호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④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이유로 민사 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 과정의 피의자가 되어 시장이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을”은 신속하게 수사진행사항의 파악 및 변호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①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부
2. 사건확정증명원 1부
3. 소취하증명원 1부

②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피소(고소 등)된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및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그 비용을 지급한다.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공무상 형사사건으로써 변호를 진행할 경우에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호의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경과 및 수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양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갑] 고 양 시 장 (직인)

[을] 고양시 고문변호사 ○ ○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청 령 서 약 서

소 속 : 법무법인 ○ ○

성 명 : ○ ○ ○

위 본인은 고양시 법률고문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문 활동 및 소송사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법률 고문 활동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 ○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변호사]

[illegible]

※참고사항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문서.면담.전화로 구분한다.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
<u>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양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변호사 범위에는 법무법인(Law firm)을 포함한다.</u> <u>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u>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u>⑤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u> <u>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u> <u>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u> <u>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u> <u>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u> <u>가. 불변기일 넘김</u> <u>나. 소송당사자와 담합</u> <u>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u> <u>라. 품위 손상</u> <u>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u>	<u>제2조(위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공개 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의 고양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한다.</u> <u>② 시장은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아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른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소송심의위원회는 별표의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표에 따라 심의한다.</u> <u>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을 고려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u> <u>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u>

현행	개정
<u><신설></u>	<u>제3조(비위행위 및 이해충돌 방지) ①</u>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부패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u>②</u> 시장은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고문변호사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u>③</u>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u>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u> <u>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u> <u>3. 본인 또는 소속법인이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우</u> <u>④</u>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u>제5조(소송비용 등) ①</u>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②</u>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며, 서면, 방문, 출장상담 등 자문사항이 월간 5회 이상일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u>제8조(소송비용 등) ①</u>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u>②</u>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	개정
<u><신설></u>	제9조(소송대리운영)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를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방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u><신설></u>	제10조(정보공개)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 및 자문수당 상향을 통해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개 모집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문변호사 정원을 확대하고 공개 모집 제도 도입 등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나. 비위행위 방지 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제3조).
- 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을 상향하여 규정함(제8조).
- 라. 소송위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9조).

제26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9월 20일

고양시 조례 제2617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50만원(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

자로 한정한다)

제4조 중 “ “별표 9” 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 를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로, “자” 를 “사람” 으로, “ “별표 4” 와” 를 “별표 4와” 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이 재 복
	팀 장 성 명	인사팀장 문 병 훈
	담 당 자 성명·전화	윤 상 건 031-8075-2387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고양시 : 갑지)

지 역 등 급	전 문 의	일 반 의
갑 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 갑지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	5급(가급)	6급(나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분노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50,000원
②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50,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 -----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50만원(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제4조(장려수당)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 ----- -----사람----- -----별표 4와-----.

현행	개정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고양시 : 갑지) <table><tr><th>지역등급</th><th>전문의</th><th>일반의</th></tr><tr><td>갑지</td><td>월 909,000원이하</td><td>월 818,000원이하</td></tr></table> ※ 갑지 : 특별시·<u>직할시</u>·도 및 시·구 비고 : 전문의는 <u>의료법</u>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u>보건사회부장관</u>의 자격 인정을 받은 <u>자</u>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u>의료법</u>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지역등급	전문의	일반의	갑지	월 909,000원이하	월 818,000원이하	[별표 1] <u>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u> (고양시 : 갑지) <table><tr><th>지역등급</th><th>전문의</th><th>일반의</th></tr><tr><td>갑지</td><td>월 909,000원 이하</td><td>월 818,000원 이하</td></tr></table> ※ 갑지 : 특별시·<u>광역시</u>·도 및 시·구 비고 : 전문의는 「<u>의료법</u>」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u>보건복지부장관</u>의 자격 인정을 받은 <u>사람</u>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u>의료법</u>」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지역등급	전문의	일반의	갑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지역등급	전문의	일반의											
갑지	월 909,000원이하	월 818,000원이하											
지역등급	전문의	일반의											
갑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현행	개정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table><tr><th> 등급별 근무년수별 </th><th>가 급</th><th>나 급</th></tr><tr><td>5 년 이 상</td><td>월 1,312,000원이하</td><td>월 973,000원이하</td></tr><tr><td>4 년 이 상</td><td>월 1,306,000원이하</td><td>월 967,000원이하</td></tr><tr><td>3 년 이 상</td><td>월 1,300,000원이하</td><td>월 961,000원이하</td></tr><tr><td>2 년 이 상</td><td>월 1,295,000원이하</td><td>월 956,000원이하</td></tr><tr><td>2 년 미 만</td><td>월 1,289,000원이하</td><td>월 950,000원이하</td></tr></table>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이하	월 973,000원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이하	월 967,000원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이하	월 961,000원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이하	월 956,000원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이하	월 950,000원이하	[별표 2] 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table><tr><th> 등급별 근무년수별 </th><th>5급(가급)</th><th>6급(나급)</th></tr><tr><td>5 년 이 상</td><td>월 1,312,000원 이하</td><td>월 973,000원 이하</td></tr><tr><td>4 년 이 상</td><td>월 1,306,000원 이하</td><td>월 967,000원 이하</td></tr><tr><td>3 년 이 상</td><td>월 1,300,000원 이하</td><td>월 961,000원 이하</td></tr><tr><td>2 년 이 상</td><td>월 1,295,000원 이하</td><td>월 956,000원 이하</td></tr><tr><td>2 년 미 만</td><td>월 1,289,000원 이하</td><td>월 950,000원 이하</td></tr></table>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등급별 근무년수별	5급(가급)	6급(나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이하	월 973,000원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이하	월 967,000원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이하	월 961,000원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이하	월 956,000원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이하	월 950,000원이하																																			
등급별 근무년수별	5급(가급)	6급(나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현행	개정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table> <tr> <th>지급대상</th><th>지급액</th></tr> <tr> <td>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td><td>250,000원</td></tr> <tr> <td>②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td><td>250,000원</td></tr> </table>	지급대상	지급액	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50,000원	②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50,000원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table> <tr> <th>지급대상</th><th>지급액</th></tr> <tr> <td>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td><td>250,000원</td></tr> <tr> <td>②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td><td>250,000원</td></tr> </table>	지급대상	지급액	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50,000원	②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50,000원
지급대상	지급액												
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50,000원												
②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50,000원												
지급대상	지급액												
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50,000원												
②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50,000원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직종개편에 따라 직종명칭을 현행화하고, 가축방역관과 동물검역관의 재난형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돼지열병 등) 방역 추진 및 어려운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사기 진작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함(제2조제1호).
- 나. 가축방역관과 동물검역관에 대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신설함(제2조제2호).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6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9월 20일

고양시 조례 제2618호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은 법 제3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양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는 소위원회 심의 및 서면심의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중 “(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라 한다)” 를 “(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라 한다)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그 밖의” 를 “그 밖에”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해체 신고를 한 건축물 중 개정규정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소관부서		건축디자인과
입안자	과장 성명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팀장 성명	건축안전관리센터팀장 박찬민
	담당자 성명·전화	조지영 031-8075-346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u><신 설></u>	<u>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u>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은 법 제3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양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양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는 소위원회 심의 및 서면심의를 포함한다.
<u>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u>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u>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u> ① ----- ------(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생 략) 4. <u>그 밖의</u> 시장이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
---	--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 해체의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정부합동 평가지표)

□ 주요내용

- 가. 건축물의 해체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규정함(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 나.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결정 시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의2제3항).

제26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2년 9월 20일

고양시 조례 제2619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50” 을 “30”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적용은 제45조의 개정규정(이행강제금 가중 비율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45조(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u>50</u> 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45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30</u> -----. ③ ~ ⑤ (현행과 같음)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고부미 · 송규근 · 원종범 의원(찬성의원: 이영훈 의원 등 24명)

□ 제안이유

- 이행강제금의 가중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건축법」을 위반하게 된 선의의 피해자인 건축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축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100분의 30으로 변경함(제45조).